

문서번호 : KB수탁사업부 45

2024-01-25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참 조 : 집합투자기구 공시 담당자

제 목 :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시요청

1. 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법률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247 조(운용행위감시등) 및 동법시행령제 246 조(신탁업자등의 감시의무 등)제 2 항입니다.
3. 신탁업자인 KB 국민은행은 아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 철회·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 영업일 이내(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)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.
4. 귀사(행)는 아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로서 귀사(행)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집합투자업자 : 골든브릿지자산운용

나. 집합투자기구명 : 골든브릿지스마트솔루션일반사모투자신탁 8 호[파생형-TRS]

다. 설정일 : 2018 년 10 월 29 일

라. 제한사항 :

- 집합투자계약 제 18 조 제 1 항(투자대상자산 등), 제 19 조 제 1 호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
- 내용 : 투자대상자산(장외파생상품)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함

마. 위반사항 :

- 위반일 : 2023 년 12 월 11 일
- 위반내용: 집합투자증권 (종목명: Arlington2 SP) 투자비율 81.73%
- 신탁업자 시정요구 : 2023 년 12 월 12 일
-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: 2024 년 01 월 24 일 위반내용 미해소(53.42%)

KB 국민은행 수탁사업부장

수신처 : 하나은행